『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』 2단계 2차년도 PBV(목적기반자동차) 부품기업 협력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

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『수요기반 협력사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』의 일환으로 PBV(Purpose Built Vehicle, 목적기반자동차)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PBV 부품기업 협력 아이템 개발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0일

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□ **사업 목적**

○ 친환경 디지털 기술 진화 및 다양한 고객 니즈에 따른 PBV(Purpose Built Vehicle, 목적기반자동차) 시장 선제대응 및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

○ PBV 관련 부품 개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사업 재편 및 미래차 전환 유도

※ PBV : 탑승객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근거리 화물운송 등 친환경 이동 솔루션

□ **지원 대상 : PBV 관련 부품기업 또는 전·후방 연관 기업**

□ **지원 범위 : 내연기관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0.5톤 ~ 2.5톤 적재량의 (픽업)트럭, SUV, RV, 미니버스 및 해당 차량에 포함되는 부품**

□ **지원 형태 : 지원사업별 직·간접 지원**

※ 중복신청 가능 (예시 : PBV용 핵심모듈 설계/시제작 지원 + 성능평가 지원 + 국내·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)

단, 'PBV용 핵심모듈 설계/시제작 지원', 'PBV 요소부품 시제작 지원', '수요처 신속대응 지원'은 3개 세부 사업 중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
□ **사업 기간 : 협약일 ~ 10월 중순**

※ 사업 기간은 선정평가 및 협약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2 지원 세부 내용

○ 기술 지원

구 분	지원형태 및 지원금	지원 건수	수행 기관	비고
PBV용 핵심모듈 설계/시제작 지원(적재함 등)	▶ 수요기반 PBV용 핵심모듈 설계/시제작 개발 지원 (기업당 최대 150백만원 내외) ※ 총 지원금의 10% 기업부담금 발생(부가세 제외)	3건 이상	GAMA	
PBV 요소부품 시제작 지원	▶ 수요기반 PBV 요소부품 시제작 개발 지원 (기업당 최대 60백만원 내외) ※ 총 지원금의 10% 기업부담금 발생(부가세 제외)	13건 이상		
수요처 신속대응 지원 (공정개선·품질개선)	▶ PBV 관련 수요처 요구사항 신속대응을 통한 성능개선, 품질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 (기업당 최대 50백만원 내외) ※ 총 지원금의 10% 기업부담금 발생(부가세 제외)	6건 이상		
성능평가 지원 (시험,평가)	▶ PBV 관련 개발 시제작 차량 및 모듈·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(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외) ※ 주관·참여기관 장비 활용 우선 ※ 수행기관 직접지원은 기업부담금 없음 ※ 외부 시험기관을 통한 지원 시, 총 지원금의 10% 기업부담금 발생(부가세 제외)	4건 이상		
성능평가 지원 (자기인증)	▶ 자기 인증 확보 지원 (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외) ※ 총 지원금의 10% 기업부담금 발생(부가세 제외)	2건 이상		

※ 상기 지원 프로그램은 PBV 관련 부품기업에 한함

※ 지원사업 별 기간, 지원건수, 금액은 별도 평가 및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
※ 기업부담금은 각 프로그램마다 상이함(총 소요비용의 부가세 또는 초과 비용은 수혜기업 자부담)

3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(공통)

○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둔 기업으로 자동차 관련 연관 기업

□ **신청제외 대상**

○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,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(각종 정산금,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중인 경우

○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
○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
○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/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/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/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/ 자본전액잠식(창업 3년 이내 제외), 부채 1,000%(연속 2년) 이상인 경우

※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
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,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을 취함

4 사업 진행 절차

❶ 사업 공고 및 접수	❷ 선정평가	❸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
지원기업 → GAMA	(1차) 서류적정성검토 (2차) 발표/서면 평가 (일정은 별도 개별 통보)	수행기관 → 지원기업

❹ 사업비 지급(1차)	❺ 중간점검	❻ 결과보고
수행기관 → 지원기업 (지원금 50%)	수행기관 → 지원기업	지원기업 → 수행기관

❼ 최종평가/검수	❽ 잔여 사업비 지급	❾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
수행기관 → 지원기업 발표평가	수행기관 → 지원기업 (지원금 50%)	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및 성과관리

※ 사업비 선지급의 경우 설계/시제작(핵심모듈, 요소부품), 수요처 신속대응에 한함

※ 단, 특수성이나 사업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전 선정기업에 지원금 지급은 가능하나,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 될 수 있음

5 평가 방법

□ **평가방법 : 자격심사 및 발표평가**

○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발표평가(또는 서면평가) 진행

○ 해당 분야 5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(평가위원회)를 통한 발표평가
- PBV용 핵심모듈 설계/시제작, PBV 요소부품 시제작, 수요처 신속대응 : 발표평가
- 그 외,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: 서면평가

□ **선정기준 : 지원의 적합성 및 계획타당성, 기술경쟁력, 사업성,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**

□ **평가 기준표**

항 목	세 부 평 가 내 용	배점
지원 적합성 및 계획 타당성 (20)	- 본 사업 방향과의 일치성 및 지원의 적합성	10
	-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성과	10
기술경쟁력 (20)	- 원천기술의 확보 및 기술의 시장지배력 - 핵심기술에서 제품화까지 기술적 know-how 보유 - 연구개발 조직, 인력보유 등 기술개발 수행 능력 - 대외기관의 공인 기술인증 여부	20
사업성 (20)	- 진입시장의 규모, 수익성, 가격경쟁력 - 기업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 경쟁력 - 시장 진입시 조기 성공실현 가능성	20
성장가능성 (20)	- 기업 및 제품의 성장성, 시장 확대 가능성 - 판로확보 및 매출발생 가능성	20
일자리 창출 기여도 (10)	- 고용창출 효과	10
경영능력 및 의지 (10)	- 재무적 건전성(성장성, 안정성, 수익성 등) -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대표자의 기업관 및 의지 - 연구 및 마케팅 전담 조직 및 인력확보 - 사업화 준비 정도(기술개발, 시제품, 양산구축 등)	10

□ **평가 유의사항**

※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사업 선정 후 또는 사업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해당기업은 **신규평가 감점기준**에 의거하여 **감점부여**

6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□ **서류 교부처**

○ 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(https://gama.or.kr)

□ **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**

○ 접수기간 : 2026. 06. 10(수) ~ 2026. 06. 26(금) 16:00까지

○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- 접수처 :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동10로 22, 4층 기업지원팀 손병관 전임 (☎062-960-9555, sbg159@gama.or.kr)

-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원본, 전자파일(USB) 및 이메일(한글, PDF파일)제출

○ 문의처

-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: 김경환 전임(☎062-960-9542)
: 손병관 전임(☎062-960-9555)

7 제출서류

□ 제출서류

연번	서 류 명	제출 부수	비고
1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1	신청서 :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: 서식(제2-1~제2-3) (원본 1부 및 전자파일)
2	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1	서식 제3호 (원본 1부)
3	민간부담금(현금) 출자 확약서	1	서식 제4호 원본 1부
4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	서식 제5호 원본 1부
5	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1	서식 제6호 원본 1부
6	중복지원금지 확약서	1	서식 제7호 원본 1부
7	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	1	서식 제8호 원본 1부
8	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서식 제9호 원본 1부
9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	1	사본 각 1부
10	재무재표(최근 3년)		'26년 설립된 기업은 예외
11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1	원본 각 1부
12	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(도면, 재료비, 견적서 등)	1	원본 각 1부

※ 재무제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,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재무제표확인원(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증명원 인정) 제출